

## ○ 상속세 신고 준비 메뉴얼

### 1)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확인

-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활용하여 사망자등 재산조회결과자료 확보  
금융감독원. 주민센터 .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(온라인)활용
- 계좌 확인 후 해당 금융기관에 상속개시일 이전 10년간의 거래내역을 USB  
에 담아 달라고 하거나 이메일로 받아 제출하며, 안되면 명세서를 출력하여  
가져오면 됨.

### 2) 상속인의 금융 거래내역

계좌별로 배우자의 금융 거래내역은 10년간,  
다른 상속인은 5년간의 금융 거래내역을 USB에 담아오면 됨.

### 3)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

국토해양부 지적 정보센터 시,군,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상속인이 가족관계증명  
서와 제적등본을 가지고 직접 방문 신청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조회 결과자료확보

## ○ 상속세 신고 준비서류

### 1) 기본서류

- 피상속인: 말소자 주민등록등본, 제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피상속인과 상속  
인 모두나오게)
- 상속인(모두) 주민등록등본1통씩
- 사망진단서,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사본

## 2) 재산관계서류

-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 (명의신탁된 부동산 포함)  
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임대차계약서 등
- 피상속인 재산 5년 이내 매도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
- 금융재산 (상속 개시일 현재)  
각 은행 계좌별 거래명세서(5년~10년) .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증명서  
보험관련 증서 : 보험증권이나 보험금 수령증  
상장주식 : 유가증권잔고증명서 및 5년간의 거래명세서(원부) 등  
비상장주식 : 주식발행회사의 상속개시일전 3년간의 재무제표, 감사보고서 등  
상속개시일 현재의 재무제표 및 주식이동 상황명세서  
법인의 자산, 부채 관련서류(법인재산 및 부채의 이동 내역)  
상속개시일전 10년간 배당내역
- 기타재산: 각종 회원권, 차량등록증 사본등
- 사전증여재산 :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명세서  
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명세서  
증여재산의 증여세 신고서 사본
- 추정상속재산 : 금융거래내역에 의한 상증법상 재산

## 3) 피상속인의 채권등

- 회사 장부상 가수금 채권 및 기타채권
- 퇴직금 여부
- 관련회사의 등기부 등본

## 4) 피상속인의 채무 및 공과금, 장례비용

-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공과금증빙서류
- 장례비 관련 증빙
- 채무와 관련된 서류 (은행 대출잔액 증명서 및 임대차 계약서 등)